「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출자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대구경북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신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음.

나. 본 사업은 2026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였고, 202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 계획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예정에 따른 자본금 확보가 필요함.

다. 이에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출자기관 : 구미도시공사

(2) 출자금액 : 현금 350억원(전액 시비)

(3) 출자시기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4) 출자금용도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5)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단위 : 억원)

현 금 출 자				비 고
계	원시자본금 ('99. 10)	공사전환 출자금 ('23. 12)	개발사업 자본금 ('24. 12)	
275.01	5.01	20	250	최대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 5,000

※ 출자 후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625.01억원

나.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위치 :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63,179㎡ ※ 산업시설용지 65만㎡

○ 사업기간 : 2025 ~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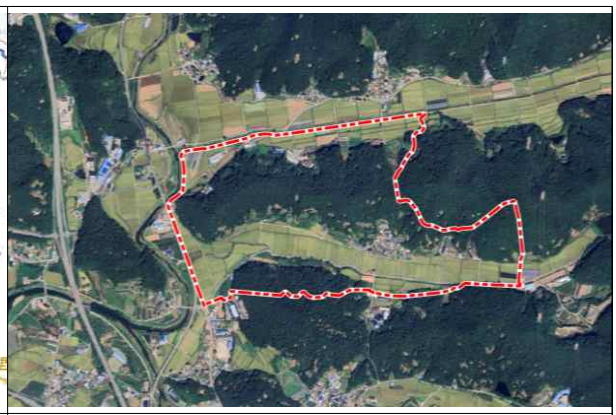
○ 사 업 비 : 3,426억원

○ 추진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사업시행자 : 구미도시공사



사업 위치



사업 구역

다. 출자 필요성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제1~5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트를 구축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구미시 핵심 정책 사업임.

○ 본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임.

○ 이에 구미시는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8조

(2)「지방공기업법」제53조

(3)「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4) 구미도시공사「정관」제4조

나. 예산조치 : 2026년(100억원), 2027년(250억원) 예산 편성

※ 출자금은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 시점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조정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5. 검토의견

○ 본 출자안은

-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인 구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자본금 확보(350억 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신규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

- 총사업비는 3,426억 원 규모이며, 2027년 보상 착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과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부채비율 200% 이하 등)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100억 원, 2027년 250억 원을 각각 출자하는 계획임.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토지 보상 지연이나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분양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됨.

-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연차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기해야 하며, 본 출자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